

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안내문

2023년 1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요율이 시설급여 기준 **4.54%** 인상되어 확정·고시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3년도 수가 인상 안내를 드리오니,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2023년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금액 (단위 : 1일, 원)

등급	2022년 현행수가	2023년 변경수가	증감액
1	74,850	78,250	+3,400
2	69,450	72,600	+3,150
3(4)	64,040	66,950	+2,910

2. 2023년 본인부담금 (단위 : 30일, 원)

등급	급여비용(A)		비급여(B) (식재료비)	합계(A+B)
1	일반(20%)	469,500	180,000	649,500
	감경(12%)	281,700		461,700
	감경(8%)	187,800		367,800
2	일반(20%)	435,600	180,000	615,600
	감경(12%)	261,360		441,360
	감경(8%)	174,240		354,240
3(4)	일반(20%)	401,700	180,000	581,700
	감경(12%)	241,020		421,020
	감경(8%)	160,680		340,680

*기초수급 어르신 무료(이용료+식재료비+촉탁의 진료비)

*식재료비(간식비 포함) : (1식)2,000원*3식*30일=180,000원

*기타 비급여 별도(병원 진료비, 촉탁의 진료비, 약제비 등)

3. 2023년 요양시설 촉탁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(단위 : 원)

구분	비용	본인부담금(기준)			
		일반(20%)	감경(12%)/의료급여	감경(8%)/의료급여	기초수급자
초진	17,320 (+350)	3,460 (+70)	2,070 (+40)	1,380 (+30)	없음
재진	12,380 (+250)	2,470 (+50)	1,480 (+30)	990 (+20)	없음

*예) 일반 수급 어르신께서 촉탁의사에게 월 2회 진료 받은 경우 : 6,130원

*초진은 촉탁의사가 어르신을 처음 뵈고 진찰 한 경우를 말하며, 그 이후는 모두 재진

4. 입소 구비서류 안내

- ①장기요양인정서 1부. ②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. ③입소용 건강진단서(결핵, 간염검사 필수) 1부.
 ④주민등록등본 1부. ⑤가족관계증명서 1부. ⑥투약 처방전 1부. ⑦어르신·보호자 신분증
 ⑧개인물품(여벌옷 등) ⑨코로나백신 예방접종 증명서 1부 ⑩코로나 PCR검사 결과서(48시간 유효) 1부